

대학원 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

제정: 2017년 2월 23일

제1조. 본 규정은 생명과학부 대학원생의 학위지도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한다.

제2조. 생명과학부 대학원생은 학위과정 입학 후 3학기부터 매 1년마다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.

- 석박사통합과정:
 - 3학기: 예비논문지도위원회
 - 7학기 이후: 논문지도위원회
- 석사과정
 - 3학기 이후: 예비논문지도위원회
- 박사과정
 - 3학기 이후: 논문지도위원회

제3조 예비논문지도위원회

- 구성: 지도교수 외 1인의 교수로 구성된다. 위원회 구성교수는 학사위원회에서 추천하고, 지도교수가 결정한다. 불가피한 경우 학사위원회의 승인 하에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
- 역할:
 - 학생의 수강 상황 점검
 - 학생의 연구진행 상황 점검
 -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한다.

제4조 논문지도위원회

- 구성: 예비논문지도위원회 외 1명의 교수를 추가한다. 위원은 지도교수가 결정한다.
- 역할:
 - 학생의 연구 진행상황 점검
 - 필요에 따라 박사논문예비심사위원회를 겸한다.

박사학위자의 논문발표에 관한 규정

제정: 2017년 2월 23일

제1조. 본 규정은 생명과학부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학위과정 동안에 국제학술지에 출판해야 하는 논문의 최소기준을 정한다.

제2조 출판논문의 최소기준

- 박사학위취득자는 학위 논문을 도서관에 보내기 전에 제1저자로 국제논문집에 발표를 확정해야 한다.
- 발표가 확정된 논문의 SNIP 지수 합이 1 이상이어야 한다. 공동제일저자 논문의 경우 2인은 70%, 3인은 50%, 4인 이상은 30%의 SNIP 지수를 적용한다.
-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충분하나 여건상 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, 지도교수의 소명에 의해 학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논문 출판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- 박사학위자의 출판논문 최소기준은 2015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논문충족 요건 탄력 운영제도

- 만일 논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할 상황이면 지도교수가 탄력운영권을 사용할 수 있다. 미비한 상황으로 학위를 마친 학생이 추후에 논문 요건을 갖추면 지도교수는 탄력운영권을 되받을 수 있다
- 교수 당 탄력운영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된다.
 - 조교수, 부교수 1개
 - 정년보장 받을 시 1개 추가 지급
 - 학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면 1개 추가 지급
 - 정교수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개 회수
-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(예를 들면, 논문요건 갖추는 동안 큰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) 학부장은 학사위원회의 제가를 받아 해당교수에게 탄력운영권을 되돌려준다.

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석박사통합과정에 관한 소개

제정: 2017년 2월 23일

- **교육 목표:**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.
- **입학:** 관심 있는 교수와 지원 전에 상담합니다. 우선 본인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교수님께 보내며 면담을 요청하십시오.
- **학점취득:** 석박사통합과정 동안 60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. 이중 핵심교과목 8개 가운데 3개를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은 3년 내에 모든 학점을 취득합니다.
- **학위과정 지도:** 적극적인 지도를 위해 학위과정동안 매해 1회 정도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를 받습니다. 이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그간 이룬 성과를 설명하고, 연구 방향을 지도 받습니다.
- **학위기간:** 6년을 목표로 합니다. 다만 연구의 성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**생활보조금:** 학위기간동안 BK 지원금 수준의 연구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. 다만 학위기간이 6년 이상 늘어나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